

제3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 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08월 11일(월) 오전 08시

2.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옥상층 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I. 감사보고

나. 부의사항

제 1호 의안 :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위탁 공지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PC 모두 가능)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5년 08월 01일 ~ 2025년 08월 10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라.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 PASS앱 인증

마.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

- 간접 행사: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주주가 법인인 경우)

2025年 07月 25日

주식회사 나노엔텍

대표이사 정찬일 (직인생략)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

1.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요 내용

1) 본건 주식교환의 당사회사

- 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주식회사 나노엔텍
- 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주식회사 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2)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주)나노엔텍은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통해 건강진단 및 컨설팅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시너지 극대화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3) 본건 주식교환의 방법 및 종류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4,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6 및 상법 제 360 조의 2 내지 제 360 조의 14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주)나노엔텍은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는 (주)나노엔텍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나. 본 주식교환을 통해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의 주식은 교환기일(2025년 10월 1일)에 (주)나노엔텍에 이전되며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의 주주들은 (주)나노엔텍의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4) 본건 주식교환비율 및 산출근거

가. 주식교환비율

구분	(주)나노엔텍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주식교환가액(1주)	3,593 원	1,706 원
주식교환비율	1	0.4748121

나. 산출근거

나노엔텍의 교환가액 :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5.06.11)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일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의 교환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4 조 내지 제 6 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과 1.5 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

주식교환일 현재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주주가 소유한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주식을 (주)나노엔텍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보통주식 1 주당 (주)나노엔텍 보통주식 0.4748121 주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주)나노엔텍이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6,267,519 주로 합니다.

주식교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1.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 360 조의 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하여 본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및 방법

1) 반대의사 통지방법

상법 제 360 조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5년 07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5년 08월 11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주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위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반대의사 통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의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5년 7월 25일 ~ 2025년 8월 8일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날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 360 조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따라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일(2025년 06월 11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 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

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 영업일 전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전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좌관리기관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기간 : 2025년 8월 11일 ~ 2025년 9월 1일

5) 접수 장소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 당해 증권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 특별계좌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12층 경영지원실

6) 주식매수가격, 지급예정시기 및 방법

- 주식매수가격 : 1주당 3,556원
- 산출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 7에 따라 이사회 결의 전일(2025년 06월 10일) 부터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출
-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일: 2025년 09월 26일)
- 지급방법 :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본인 계좌로 이체 예정

7)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 7 제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에 의한 주식교환으로 (주)나노엔텍의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금액과 (주)에이아이헬스케어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을 합한 총액이 1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중 제1호 의안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 주 번 호	※당사에서 기재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주

2025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나노엔텍 귀중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제 1 호 의안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승인의 건)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당사에서 기재
소 유 주 식 수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주식매수대금 입금계좌 (주주 본인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소유주식수 중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총계를 기재

2025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나노엔텍 귀중